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1-57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1월 9일  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이유

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, 결정,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로써 지방자치와 그 흐름을 같이 하여 그 역할이 중요한 바, 관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·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위원추천운영위원회로 변경함(안 제6조)
- 나. 실무상황을 반영하여 위원의 자격을 보다 실질화함(안 제7조)
- 다.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를 추가함(안 제16조)
- 라.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명시함(안 제22조)
- 마.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운영세칙 조항을 명시함(안 제29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5, FAX : 820-1474, E-mail : emrq0107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**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호 중 “운영”을 “운영 및 민의수렴”으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50명”을 “30명 이상 50명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위원선정관리위원회)”를 “(위원추첨운영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위원선정관리위원회(이하 “선정관리위원회”)”를 “위원추첨운영위원회(이하 “추첨운영위원회”)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② 추첨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다음”을 “18세 이상 주민으로서 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선정관리위원회”를 “추첨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“선정관리위원회”를 각각 “추첨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간사)”를 “(간사 또는 사무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호선하여”를 “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”로 한다.

제17조제3항 전단 중 “분과위원 중”을 “분과위원으로서 제7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중”으로 한다.

제4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주민자치협의회)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 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.

③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.

④ 구청장은 주민자치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 제목 “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”을 “(주민자치회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공간”을 “전용 공간”으로, “행정적·재정적”을 “행정적 지원과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의 재정적”으로 한다.

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,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새로 위촉되는 위원 또는 선출되는 분과위원장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능) 주민자치회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<u>운영을 위한 업무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5조(정원)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<u>50명</u> 이내로 구성한다. 다만, 구청장은 동별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위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<u>위원선정관리위원회</u>) ① <u>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(이하 “선정관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,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1. <u>동장 추천자 2명 이내</u></p> <p>2. <u>관내 주요 기관·단체 및 주민자</u></p>	<p>제4조(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운영 및 민의수렴</u>-----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정원) ----- <u>30명 이상 50명</u> ----.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<u>위원추첨운영위원회</u>) ① ----- ----- ----- <u>위원추첨운영위원회(이하 “추첨운영위원회”</u>----- -----.</p> <p>② <u>추첨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</u></p>



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.

1. 2. (생략)

3.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

4. 5. (생략)

제8조(위원의 위촉)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.

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,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예비자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· ④ (생략)

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~ ⑨ (생략)

제16조(간사) ① 주민자치회는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호선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· ③ (생략)

② 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추첨운영위원회 -----  
-----

4. 5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위원의 위촉) ① ----- 추첨운영위원회-----  
-----.

② 추첨운영위원회-----  
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추첨운영위원회-----  
-----  
-----.

⑥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간사 또는 사무국) ① -----  
-----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분과위원회) ①·② (생략)

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 득표자를 선출한다.

④·⑤ (생략)

<신설>

제22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 ①·② (생략)

제17조(분과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 분과위원으로서 제7조에 따른 주민자치 위원 중-----.  
-----  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19조의2(주민자치협의회)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.

③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.

④ 구청장은 주민자치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.

제22조(주민자치회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및 공간 지원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 -----

----- 전용 공간 --- 행정적 지원과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의 재정적 ---.

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인 주민참여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,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9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